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선 결	기 관 의 장

제1334호 2018. 5. 14.(월)

고 시

○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----- 2

기 타

○ 시정알림판 ----- 12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고시 제2018-64호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

「주택법」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5. 14.

목 포 시 장

1. 사업명 : 목포 석현동 라송센트럴카운티5차아파트
2. 사업주체
 - 성 명 : 라송산업(주) 대표 이병균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, 여의도동 대영빌딩
3. 사업승인 개요
 - 위 치 :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1060번지 외 37필지
 - 규 모 : 9동, 지하1층/지상17층~25층, 756세대, 연면적 108,290.7571㎡
 - 공급유형 : 임대
4. 사업계획(변경)승인일 : 2018. 4. 30.
5. 착공예정일자 : 2018. 6. 1.
6. 준공예정일자 : 2020. 8. 31.
7. 기 타

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주택법 제19조에 의거 다른 법률 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·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
8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: 붙임1

[붙임1]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표시 번 호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14	석현 지구단위계획구역	목포시 석현동 일원	168,020	증)12,795	180,815	
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위 치	면 적(㎡)	변 경 사 유
변경	14	목포시 석현동 일원	180,815	•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지역민에게 양질의 주택공급과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기 수립된 석현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

2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)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(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168,020	증)12,795	180,815	100.0	
주 거 지 역	168,020	증)12,715	180,735	99.9	
제1종일반주거지역	153,745	감)29,611	124,134	68.6	
제2종일반주거지역	-	증)42,326	42,326	23.4	
준 주 거 지 역	14,275	-	14,275	7.9	
자 연 녹 지 지 역	-	증)80	80	0.1	

○ 용도지역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위 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	결정(변경)사유
		기 정	변 경			
-	석현동 1066-1번지 일원	제1종일반 주거지역	제2종일반 주거지역	42,326	245% 이하	• 기 수립된 석현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
-	석현동 1128-54번지 일원	-	자연 녹지지역	80	100% 이하	•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편입

(2)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• 방재지구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지구명	위 치	제한내용	면 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	1	하당지구	석현동 석현들 일원	-	1,002,500 (180,815)	전남고시 제2000-129호 (2000.7.5)	

주 : ()는 지구내 면적임

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(1) 교통시설

○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1	3	35	주간선 도로	4,430	대1-1 석현동 511-4도	하구둑 옥암동 946도	일반 도로	25호 광장	전남고시 제1996-264호 (1996.9.5)	
기정	대로	3	6	25	주간선 도로	1,575	대1-1 석현동 746-13도	목포시경계 석현동 180-7도	일반 도로	대로 1-3	1976년 이전	지구 밖
변경	대로	3	6	25	주간선 도로	1,096	대1-3 석현동 1101-7도	목포시경계 석현동 180-7도	일반 도로	-	"	지구 밖
변경	중로	2	1	15	국지 도로	288	대1-1 석현동 746-13도	소3-1 석현동 1128구	일반 도로	-	"	
기정	중로	1	51	20	집산 도로	227	대1-1 석현동 503-16수	농수산물 도매시장 석현동 1128-44구	일반 도로	-	목포시고시 제2003-99호 (2003.12.27)	
기정	중로	1	73	20	집산 도로	490	대3-6 석현동 1066-2답	중3-77 석현동 555-9답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2010-89호 (2010.4.5)	
변경	중로	1	73	20	집산 도로	296	중1-51 석현동 1054-7답	중3-77 석현동 555-9답	일반 도로	-	"	
변경	소로	3	1	7.5	국지 도로	132	중2-1 석현동 1128구	완충녹지 석현동 1128-13철	일반 도로	-	"	
기정	중로	2	64	15	국지 도로	246	대1-3 석현동 1100-2도	대1-3 석현동 1039-5도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제2010.89호 (2010.4.5)	
기정	중로	3	76	12	국지 도로	213	중1-51 석현동 1050-3답	중2-64 석현동 1039-2답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)	
기정	중로	3	77	12	국지 도로	45	대1-3 석현동 553답	중1-73 석현동 555-9답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)	
기정	소로	1	296	10	국지 도로	333	대3-6 석현동 1068-2답	대1-1 석현동 624-5전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)	
변경	소로	1	296	10	국지 도로	148	대1-1 석현동 624-5전	석현동 1056-7답	일반 도로	-	"	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1	297	10	국지 도로	170	소1-296 석현동 1063-2답	소1-296 석현동 1060답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)	
변경	소로	3	2	6	국지 도로	70	소1-296 석현동 1060답	학교 석현동 1060답	일반 도로	-	"	
폐지	소로	1	298	10	국지 도로	55	중1-73 석현동 1065-2답	소1-296 석현동 1064-2답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)	
폐지	소로	1	299	10	국지 도로	150	대로3-6 석현동 1083-1답	중1-73 석현동 1086-2답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)	
기정	소로	1	300	11	국지 도로	13	중2-64 석현동 1039-5도	대1-3 석현동 1039-5도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)	
기정	소로	2	608	8	국지 도로	65	농수산물 도매시장 석현동 1041-1답	중3-76 석현동 1040-2답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)	
기정	소로	3	459	6	국지 도로	230	중2-64 석현동 1038장	중3-77 석현동 553답	일반 도로		목포시고시 제2014-29호 (2014.2.13)	

○ 도로 변경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로 3-6	대로 3-6	• 도로 연장축소 및 기점 변경 - 연장 : 1,575m → 1,096m - 기점 : 대1-1, 석현동 746-13도 → 대1-3, 석현동 1101-7도	•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지구내 편입 되는 도로 연장축소 및 기점 변경
대로 3-6	중로 2-1	• 도로 폭원 축소 및 신규 노선명 부여 - 폭원 : 25m → 15m, 연장 : 288m	•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연장축소된 대로 3-6호선 부지에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신규 노선명 부여
중로 1-73	중로 1-73	• 도로 연장축소 및 기점 변경 - 연장 : 490m → 296m - 기점 : 대3-6, 석현동 1066-2답 → 중1-51, 석현동 1054-7답	•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지구내 편입 되는 도로 연장축소 및 기점 변경
중로 1-73	소로 3-1	• 도로 폭원 축소 및 신규 노선명 부여 - 폭원 : 20m → 7.5m, 연장 : 132m	•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연장축소된 중로 1-73호선 부지에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신규 노선명 부여
소로 1-296	소로 1-296	• 도로 연장축소 및 기·종점 변경 - 연장 : 333m → 148m - 기점 : 대3-6, 석현동 1068-2답 → 대1-1, 석현동 624-5전 - 종점 : 대1-1, 석현동 624-5전 → 석현동 1056-7답	•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지구내 편입 되는 도로 연장축소 및 기·종점 변경
소로 1-297	소로 3-2	• 도로 폭원·연장 축소 및 기·종점 변경 - 폭원 : 10m → 6m - 연장 : 170m → 70m - 기점 : 소1-296, 석현동 1063-2답 → 소1-296, 석현동 1060답 - 종점 : 소1-296, 석현동 1060답 → 학교, 석현동 1060답	•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지구내 편입 되는 도로 폭원·연장 축소 및 기·종점 변경
소로 1-298	-	• 도로 노선폐지	•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지구내 편입 되는 도로폐지
소로 1-299	-	• 도로 노선폐지	•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지구내 편입 되는 도로폐지

○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74	주차장	석현동 1047-2답 일원	1,166	-	1,166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)	
폐지	75	주차장	석현동 1065-3답 일원	900	감)900	-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)	

○ 주차장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75	주차장	- 주차장 폐지 - 위치 : 석현동 1065-3답 일원 - 면적 : 900㎡	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지구내 편입되는 주차장 폐지

○ 철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		연장 (m)	면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점	종 점	주 요 경과지				
기정	1	철도	일반철도 (본선)	목포시 경계	목포시 호남동 1-1	임성리역, 석현공원, 목포체육관, 목포역	6,290 (460)	215,938 (5,570)	목포고시 2008-42호 (2008.6.13)	

주 : ()는 지구내 면적 및 연장임

(2) 공간시설

○ 광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14	광장	교통 광장	목포시 석현검문소 앞 (석현동 국도분기점)	675	-	675	전남고시 제1985-83호 (1985.5.17)	

○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6	녹지	완충 녹지	호남선 복선화 철도변	32,880	-	32,880 (9,190)	전남고시 제2000-129호 (2000.7.5)	

주 : ()는 지구내 면적임

○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공원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120	공원	소공원	석현동 1039-5도 일원	448	-	448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)	
기정	121	공원	소공원	석현동 1128-2구 일원	2,338	-	2,338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)	

○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10	공공공지	석현동 1083-1답 일원	-	2,905	2,905	-	

○ 공공공지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0	공공공지	- 공공공지 신설 - 위치 : 석현동 1083-1답 일원 - 면적 : 2,905m²	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주민들의 보행안전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신설

(3) 유통 및 공급시설

○ 시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5	시장	농수산물 도매시장	목포시 석현동 1086-1 일원	14,275	-	14,275	목포시고시 제2003-244호 (2003.12.17)	

(4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○ 학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67	학교	초등 학교	목포시 석현동 1060 일원	12,240	증)67	12,307	목포시고시 제2003-2호 (2003.1.9)	

○ 학교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67	학교	- 면적 증가 - 면적 : 12,240m² → 12,307m² 증)67m²	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학교주변 도로선형 변경에 따라 학교 구역계 변경

나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○ 기 정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(m ²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적(m ²)	
A1	A1	18,574	석현동 560-1대 일원	18,574	자율적 공동개발 권장
A2	A2	20,114	석현동 1035-1답 일원	20,114	
A3	A3	2,956	석현동 1054-1답 일원	2,956	
A4	A4	5,861	석현동 1045-2답 일원	5,861	
A5	A5	8,205	석현동 1041답 일원	8,205	
A6	A6	2,242	석현동 1095답 일원	2,242	
A7	A7	5,841	석현동 1058-3잡 일원	5,841	
A8	A8	7,114	석현동 1061-1답 일원	7,114	
A9	A9	1,840	석현동 1064-1답 일원	1,840	
A10	A10	7,403	석현동 1059대 일원	7,403	
A11	A11	5,410	석현동 1067-1답 일원	5,410	
A12	A12	6,268	석현동 1084-2답 일원	6,268	
A13	A13	851	석현동 563-5도 일원	851	
B1	B1	14,275	석현동 1086-1대 일원	14,275	-

○ 변 경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(m ²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적(m ²)	
A1	A1	18,574	석현동 560-1대 일원	18,574	자율적 공동개발 권장
A2	A2	17,747	석현동 1035-1답 일원	17,747	
A3	A3	2,956	석현동 1054-1답 일원	2,956	
A4	A4	5,861	석현동 1045-2답 일원	5,861	
A5	A5	8,349	석현동 1041답 일원	8,349	
A6	A6	646	석현동 1085-5철 일원	646	
A7	A7	5,785	석현동 1058-3잡 일원	5,785	
A8	A8	8,196	석현동 1059대 일원	8,196	
A9	A9	851	석현동 563-5도 일원	851	
A10	A10	88	석현동 1056-7답 일원	88	
B1	B1	14,275	석현동 1086-1대 일원	14,275	-
C1	C1	34,130	석현동 1066-1답 일원	34,130	-

2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○ 기 정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비고
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	A1~A13	용도	허용 용도	•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
			권장 용도	•공장중 인쇄업, 기록매체복제업, 봉제업,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,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,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것
			불허 용도	•교정 및 군사시설, 발전시설
		건폐율	•60% 이하	
		용적률	•200% 이하	
		높 이	•4층 이하	
		배 치	•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, 채광, 통풍 등을 고려하여 동향 또는 남향의 배치를 권장하고,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는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함	
		형 태	•지붕형태 : 경사지붕을 하되, 30% 범위 이내에서 평지붕을 허용하도록 하며, 이 경우 옥상층에는 물탱크 등의 부대시설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, 옥상녹화를 권장(지붕구배는 3/10 이상, 7/10이하) •담장 및 대문 :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(높이 1.2m 이하) •건축물 외벽의 재료 : 건축물 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•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 :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	
		색 채	•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,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(type)을 사용하도록 유도	
		건축선	-	
준 주 거 지 역	B1	용도	허용 용도	•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준주거지역에서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
			권장 용도	•판매시설
			불허 용도	•교정 및 군사시설, 발전시설
		건폐율	•70% 이하	
		용적률	•500% 이하	
		높 이	-	
		배 치	•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, 채광, 통풍 등을 고려하여 동향 또는 남향의 배치를 권장하고,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는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함	
		형 태	•지붕형태 : 경사지붕을 하되, 30% 범위 이내에서 평지붕을 허용하도록 하며, 이 경우 옥상층에는 물탱크 등의 부대시설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, 옥상녹화를 권장(지붕구배는 3/10 이상, 7/10이하) •담장 및 대문 :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(높이 1.2m 이하) •건축물 외벽의 재료 : 건축물 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•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 :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	
		색 채	•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,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(type)을 사용하도록 유도	
		건축선	-	

주 : 상기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

○ 변 경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제 획 내 용	비고
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	A1~A10	용도	허용 용도	•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
			권장 용도	• 공장중 인쇄업, 기록매체복제업, 봉제업,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,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,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것
			불허 용도	• 교정 및 군사시설, 발전시설
		건폐율	• 60% 이하	
		용적률	• 200% 이하	
		높 이	• 4층 이하	
		배 치	•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, 채광, 통풍 등을 고려하여 동향 또는 남향의 배치를 권장하고,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는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함	
		형 태	• 지붕 형태 : 경사지붕을 하되, 30% 범위 이내에서 평지붕을 허용하도록 하며, 이 경우 옥상층에는 물탱크 등의 부대시설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, 옥상녹화를 권장(지붕구배는 3/10 이상, 7/10이하) • 담장 및 대문 :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(높이 1.2m 이하) • 건축물 외벽의 재료 : 건축물 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•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 :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	
		색 채	•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,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(type)을 사용하도록 유도	
		건축선	-	
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	C1	용도	허용 용도	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
			불허 용도	•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제13호 부대시설, 제14호 복리시설
			건폐 율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용적률	• 30% 이하	
		높 이	• 245% 이하	
		배 치	• 25층 이하	
		형 태	• 채광, 일조, 쾌적성을 감안한 향 배치	
		형 태	• 지붕 :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심미성 증진을 위하여 조형적 형태의 지붕 권장 • 담장 :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투시형 담장 및 조경 담장 계획	
		형 태	• 지붕 형태 : 경사지붕을 하되, 30% 범위 이내에서 평지붕을 허용하도록 하며, 이 경우 옥상층에는 물탱크 등의 부대시설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, 옥상녹화를 권장(지붕구배는 3/10 이상, 7/10이하) • 담장 및 대문 :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(높이 1.2m 이하) • 건축물 외벽의 재료 : 건축물 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•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 :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	

주 : 상기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제 획 내 용	비고
준 주 거 지 역	B1	용도	허용 용도	•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준주거지역에서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
			권장 용도	• 판매시설
			불허 용도	• 교정 및 군사시설, 발전시설
		건폐율	• 70% 이하	
		용적률	• 500% 이하	
		높 이	-	
		배 치	•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, 채광, 통풍 등을 고려하여 동향 또는 남향의 배치를 권장하고,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는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함	
		형 태	• 지붕형태 : 경사지붕을 하되, 30% 범위 이내에서 평지붕을 허용하도록 하며, 이 경우 옥상층에는 물탱크 등의 부대시설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, 옥상녹화를 권장(지붕구배는 3/10 이상, 7/10이하) • 담장 및 대문 :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(높이 1.2m 이하) • 건축물 외벽의 재료 : 건축물 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•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 :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	
		색 채	•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,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(type)을 사용하도록 유도	
		건축선	-	

주 : 상기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

시 정 알 림 판

5월은 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신고·납부의 달



- 납부기간 : 2018. 5. 1.(화)~5. 31.(목)
 - 납부대상 :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의무가 있는 자
 - 신고방법 :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 또는 전자신고
(소득세와 동시 신고)
 - 납 세 지 :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납세자의 주소지
 - 세 율 : 0.6~4% (종합소득세율의 10%)
 - 납부방법 : 위택스(www.wetax.go.kr), ARS ☎ 080-270-8880(무료) ☎ 061-270-8880(유료), 모든 은행 ATM기, 금융기관 방문
 - ※ 기한 내 무신고 시, 무신고가산세(20%~40%)와 납부불성실가산세(1일 3/10,000 x 납부지연일자) 부과
- 세정과 ☎ 061-270-8452**

목포시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

-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이란?
타시도 전입 대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
- 지원대상 : 목포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'18. 1. 1. 이후 목포시에 전입신고를 한 대학생
※ 대상대학교 : 목포해양대학교, 목포가톨릭대학교, 목포과학대
- 제외대상
 - '18. 1. 1. 이전에 이미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 중인 학생
 - 최근 1년 이내에 목포시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록이 있는 학생
- 지원금액 : 최대 **40만원**(전입 신고 시 **20만원**, 1년간 주소 유지 **10만원**, 2년간 주소 유지 **10만원**)
※ 단, 타지역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 지원 대상 자격 상실(목포시 관내 이동은 지원 가능)
※ '18. 6. 30.까지 전입할 경우 5만원 상품권을 먼저 지급하고, 7월 이후 생활안정자금 15만원 추가 지원
'18. 7. 1. 이후 전입할 경우 20만원 현금 지급
- 신청방법
 - 최초(1차) :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 시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
※ 재학증명서, 주민등록 초본(주소변동 내역 포함), 학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
 - 2·3차 : 지급 시기 1개월 전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



기획예산과 ☎ 061-270-3624

시 정 알 림 판

목포시보건소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



- 지원대상 : 만12세 이하 어린이(2005년 이후 출생자)
- 지원내용 : 국가예방접종의 접종비용(지원백신 17종 백신비 및 시행비) 전액
※ 일부 백신은 지원대상 연령이 다름
- 접종기간 : 연 중
- 접종시간
 - 미취학 및 영유아 : 09:00 ~ 11:30
 - 초등학교 09:00 ~ 15:00, 중·고등학교 09:00 ~ 17:00

○ 지원기관 : 전국 보건소 및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가능

※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(nip.cdc.go.kr)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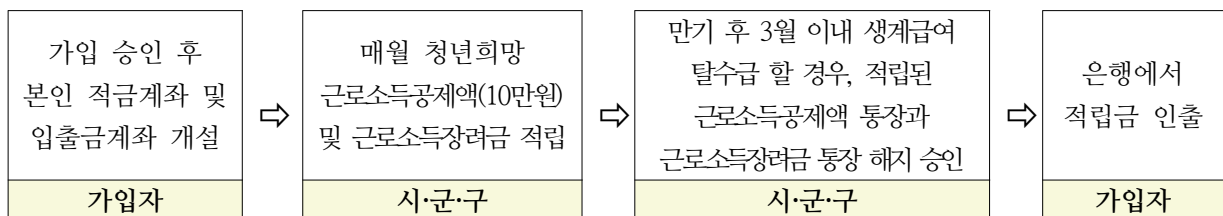
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☎ 061-270-8800

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모집

- 청년희망키움통장?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을 향한 꿈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- 지원대상 :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* 중,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·사업 소득(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)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% 이상인 청년

* 생계급여수급 가구원 내 청년(만 15~34세) 대상

- 모집기간 : 매월 초 신규 모집(4월~11월)
- 지원내용
 - 근로·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
※ 청년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
 - 지원 액수 : 3년 평균 1,440만원 적립(최대 2,106만원)
 - 근로소득공제액 저축 및 장려금 지원 절차



※ 청년희망키움통장 3년간 유지 시 탈수급을 못해도 근로소득공제금(최대 360만원) 지원 가능

- 통장 사용용도 :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·임대,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·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·운영 자금, 그 밖의 자활·자립에 활용

※ 지원금 수령시 가입자는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 증빙자료(영수증 등)를 제출하여야 함

- 접수처 : 신청인 거주지 주민(행정복지)센터

가입문의는 국번없이 ☎ 129(보건복지부 콜센터), 상품문의는 ☎ 1599-0079(하나은행)